

해양·수산관련 법령 제·개정 주요내용(2014년 하반기)

정부대행검사실 마 주 환

1.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정

▣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-77호, 2014. 07. 08

○ 제정 배경

- 친환경 전기어선 보급을 위해 어선법 제3조에 따라 「축전지 추진 어선 설비기준」을 제정함

○ 주요 내용

- 가.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(제3조 및 제4조)
 -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에 적용하고,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」을 적용

나. 축전지 설비의 설치(제2장)

-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방폭 요건에 적합한 전기설비를 사용하고, 축전지는 보호요건에 적합한 상자에 설치하도록 함

다. 축전지 설비의 제어(제3장)

- 축전지의 안전한 사용 및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한 제어·감시기능과 경보 및 비상차단장치를 갖추도록 함

라. 화재 안전(제4장)

- 축전지실에는 전기화재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추고, 해당 소방설비의 작동이 유효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

마. 축전지의 충전(제5장)

- 외부로부터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

설비의 보호요건을 정하고 역전류 방지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함

○ 적용 시기

- 시행일 : 2014년 7월 8일

2.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

▣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-102호, 2014. 09. 11

○ 개정 배경

- 카페리선박에 탑재되는 차량·화물의 고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,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

○ 주요 내용

- 가. 카페리선박의 구획 및 손상복원성 요건 마련(제16조의2~제16조의5, 제17조의2~제17조의6)

- 2007. 11. 2 선박구획기준 전면 개정시 삭제된 준용 기준들을 현행 카페리선박 기준에 명시함

- 제16조의2(격벽의 굴절부)
- 제16조의3(격벽의 계단부)
- 제16조의4(굴절부 등이 있는 길이)
- 제16조의5(횡격벽사이의 거리확보)
- 제17조의2(손상시의 복원성의 계산)
- 제17조의3(침수구획실의 침수율)

- 제17조의4(손상범위의 가정)
 - 제17조의5(비대칭의 침수)
 - 제17조의6(관의 손상에 대한 설비)
- 나. 차량적재도 승인 관련(제18조)
- 차량적재도 표시사항에 차량 및 화물의 고정방법을 추가
 - 기존에는 기본차종에 대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고 기본차종의 소유자가 특별히 신고자 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승인 하였으나, 승인받은 차량의 총중량의 범위 이내이고 고정방법과 고박강도 등이 적합한 경우 다른 자동차,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등을 준용하여 적재 가능하도록 개정됨
- 다. 차량적재도에 따른 차량적재를 완화 받을 수 있는 해상상태에 대하여 명시함(제20조 제1항단서)
- 선장, 운항관리자 등이 현장에서 해상상태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상기상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(해상상태가 파고 1.5미터 이하, 풍속 7m/sec 이하)
- 라. 차량적재도에 따른 고정방법을 명확히 함 (제20조제2항)
- 카페리선박의 차량 및 화물을 묶어 매는 설비를 구체적으로 정함(턴버클, 웹래싱, D링, 클로버 소켓, 텍크아이 등)
- 마. 차량을 묶어 매는 설비 요건 개정(제21조)
- 카페리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고박설비 조건에 대한 횡요각을 20°에서 25°로 강화
 -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1,000톤 이상의 경우 고장 등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설비를 추가로 비치
 - 차량 및 화물을 묶어 매는 설비의 요건을 강화하고 추가설비 요건 신설
- 바. 적재되는 화물의 용량(제22조)

- 특수한 화물을 실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 허가를 받을 경우 적재할 수 있도록 함
- 화물의 적재 높이는 4.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,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적재 공간을 가지는 밴 등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대하여 덮개의 최상단까지의 높이까지 허용함

○ 적용 시기

가. 신조선 및 도입선 : 2014년 9월 11일부터

나. 현존선

- 1)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20조제2항, 제2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: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함
- 2) 상기 1) 외의 개정규정 :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함

3. 선박설비기준 개정

■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-103호, 2014. 09. 11

○ 개정 배경

- 카페리선박에 탑재되는 차량·화물의 고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,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

○ 주요 내용

- 가.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연안여객선에 대한 탈출설비 관련 추가요건 신설(제48조의2)
- 공공구역과 탈출로에 설치된 가구 등이 선박의 경사 시 이동방지를 위해 고정토록 함
- 모든 탈출경로의 양쪽에 탈출방향을 표시 하는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 또는 설치토록 함
- 객실 및 공용실에 수용정원 또는 최대승선

- 인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수밀 손전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비치토록 함
- 출입문 손잡이에서 횡방향의 벽까지 거리가 3미터 이상인 모든 객실과 공용실의 바닥, 천정, 벽면 중 어느 하나에 출입문까지 다다를 수 있는 사다리 형태의 구조 또는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
- 객실과 객실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경우 복도의 한쪽 끝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 다다를 수 있는 사다리 형태의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
- 객실 및 공용실에 비상탈출 시 창문을 깨트릴 수 있는 일정 강도 이상의 망치 등을 비치하도록 함

나. 총톤수 300톤 이상 연안여객선에 간이항해 자료기록장치(S-VDR)를 탑재하도록 함 (제108조의7)

○ 적용대상 및 시기

- 가.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연안여객선에 대한 탈출설비 관련 추가요건 신설(제48조의2)
 - 신조선 및 도입선
 - 적용대상 :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여객선
 - 적용시기: 2014년 9월 11일
 - 현존선
 - 적용대상 :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연해 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,000톤 이상의 여객선
 - 적용시기: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 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

나. 총톤수 300톤 이상 연안여객선에 간이항해 자료기록장치(S-VDR)를 탑재하도록 함 (제108조의7)

- 신조선 및 도입선
 - 적용대상 :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 여객선
 - 적용시기: 2014년 9월 11일
- 현존선
 - 적용대상 :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국내항해(연해구역 이상)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
 - 적용시기: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 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시부터 적용

4.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개정

▣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-125호, 2014. 11. 20

○ 주요 내용

- 선박용 내연기관의 중요부품에 대한 예비 검사 대상에 대하여 명칭을 명확하게 정함
- * 재료시험 대상부품 : 크랭크 축, 강재 피스톤크라운, 피스톤로드, 강재 실린더라이너, 강재 실린더커버, 연접봉, 크로스헤드, 타이로드, 용접구조의 프레임, 용접구조의 베드플레이트, 축 커플링 및 축 커플링 볼트, 볼트류(주 베어링, 연접봉 베어링 및 크로스 헤드베어링용), 배기터빈 과급기(축, 로터)

○ 적용 시기

- 시행일 : 2014년 11월 20일

5. 고속선기준 개정

▣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-146호, 2014. 12. 23

○ 개정 배경

- 국제항해 고속선의 위성 EPIRB의 점검은

「전파법」에 따른 정비 주기 및 요건에 따라 점검토록 개정하여 현행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

- IMO에서 채택*한 국제고속선코드(2000 HSC Code)의 선상에서 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 수행 요건 신설 등에 따라 개정 필요
- * IMO 제92차 해사안전위원회(13. 6)에서 Res. MSC.352(92)로 국제고속선코드(2000 HSC CODE) 개정안 채택(발효 : 15. 1. 1)

○ 주요 내용

- 가. 고속선의 위성 EPIRB 점검 방법 개정(별표 1, 14.15.10)
 - 고속여객선의 위성 EPIRB의 점검 주기는 본문(14.15.10.1)에서는 매년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, 하위조문(14.15.10.1.1)에서 매 5년마다 점검토록 하여 서로 불일치하므로,
 - 고속선의 위성 EPIRB의 점검은 「전파법」에서 정하는 정비 주기 및 요건에 따라 수행토록 개선
- 나. 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의 참석, 기록 유지, 수행방법 등 개정(별표 1, 18.5.4, 18.5.8.1, 18.5.12)
 - 매 2월마다 최소 1회 개최되는 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의 참석, 훈련에 대한 기록유지, 훈련의 계획 및 시행에 따른 세부 방법 및 선내절차에 대한 신설 내용 반영
 - 탈출훈련의 각본은 다양한 비상상태가 연출 되도록 매주 변경(국제고속선코드 18.5.9.1 요건을 추가 수용)

○ 적용 시기

- 가. 시행일 : 2014년 12월 23일
- 나. 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에 대한 경과 조치
 - 적용시기 : 2015년 1월 1일

6.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

▣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-154호, 2014. 12. 24

○ 개정 배경

-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내 운항 카페리여객선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자동복원형 구명뗏목 탑재, 강하식탑승장치 추가(각 현에 1개 이상 → 각 현에 2개 이상) 및 구명조끼 추가(10%) 비치 등 안전조치 강화
- 또한, 국제협약(SOLAS) 누락사항(구명조끼 5% 추가) 반영 및 자동복원형 구명뗏목의 점진적 탑재 등을 위해 개정 필요

○ 주요 내용

- 가. 비상 시 구명뗏목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자동복원형구명뗏목의 점진적 사용(제64조 제2항, 제74조제2항, 제75조제4항 및 부칙 제2조)*
- 나. SOLAS협약 개정규정(98. 7. 1 발효)의 누락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국제항해 카페리 여객선의 구명조끼를 소집장소 부근에 추가 비치(제71조제6항)**
 - 해당 구명조끼는 소집장소 부근(여객실 외부)에 추가로 분산 비치(제118조제1항 제3호)**
- 다. 평수구역 내에서 구명뗏목을 20%,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80% 비치하여야 하는 운항조건에 “육지에 소재한 기항지를 출발하여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 이내”를 추가(제75조제2항가목)
- 라. 평수구역 중 항내 운항 여객선의 구명설비 강화(현행 25%→50%, 제76조제1항)**
 - 호수, 하천 운항 선박은 현행대로 25%만 비치하고, 해상날씨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

항만 내 운항선박은 50%를 비치토록 강화
 마. 비상 시 객실 밖의 여객이 바로 착용할 수
 있도록 구명조끼 10%를 여객실 밖에 추가로
 비치(제80조제4항)**

- 해당 구명조끼는 여객실 외부에 승선자의
 눈에 띄기 쉬운 장소 또는 소집장소 근처에
 분산 비치되어 있을 것(제118조제1항제4호)**

○ 적용 시기

가. 신조선 및 도입선 : 2014년 12월 24일부터
 나. * 표기

- 제1종선 :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
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
 적용
- 제2종선 :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
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시부터
 적용

다. ** 표기 : 현존선의 경우 해당 규정에 대
 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
 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

7.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

▣ 해양수산부 부령 제2014-123호, 2014. 12. 29

○ 개정 배경

- 국제해사기구(IMO)에서 부선(艇船)에 대하여
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의무를 면제
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국내 이행을 위하여
 현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
 에서 제외하고 있는 선박의 범위에 부선을
 추가함
-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지 아니한 단일선체
 유조선의 운항이 금지됨에 따라 단일선체
 유조선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

검사 시에 실시하는 상태평가검사의 실시와
 관련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

○ 주요 내용

- 가.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 면제대상에
 부선을 추가(제30조의4제1항)
- IMO의 부선에 대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
 계획서(SEEMP) 비치 면제승인에 따른 국내
 수용

- (기존 제외대상) 시추선 및 플랫폼
- 개정) 시추선, 플랫폼 및 부선

나. 상태평가검사 및 관련 증서발급 등에 관한
 조항·서식 개정 및 삭제(제42조, 제48조
 제2항제3호, 별표35, 별지 제11호~제15호·
 제26호·제27호서식)

- 단일선체 유조선(DWT 5,000 이상)의 조기
 퇴출('10. 12. 31)에 따라 이들 유조선에 적용
 되는 상태평가검사 관련 규정 삭제

다.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추록에 질소산화물
 배출허용기준 표시란 신설(별지 제21호서식)
 - 민원인이 질소산화물(NOx) 배출허용기준을
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대기오염방지
 증서 추록에 다음과 같이 표기
 '이 기관은 []기준 1, []기준 2, []
 기준 3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한다.'

○ 적용 시기

가. 시행일 : 2014년 12월 29일

나. 개정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적용시기

- 이 규칙 시행 후 해양환경관리법 제54조
 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는 경우

※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
 공단 홈페이지 '정보마당-법령정보'를 참고
 바랍니다.

☎ 국가법령정보센터 : www.law.go.kr
 선박안전기술공단 : www.kst.or.kr